

●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000호

부천 원미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 변경) 고시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050호(2021.09.01.)로 지구 지정 고시된 부천 원미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56조 제3항에 따라 혁신지구계획 변경사항(경미한 사항 변경)을 고시합니다.

2022. 05. 00.

국토교통부장관

1. 국가시범지구의 명칭 (변경 없음) : 부천 원미 도시재생혁신지구(국가시범지구)
2. 국가시범지구의 위치 및 면적 (변경 없음)
 - 가. 위 치 :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71번지 일원
 - 나. 면 적 : 12,252㎡
3.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 (변경 없음) : 청년창업, 커뮤니티, 사회적 기업 등이 융복합된 미래혁신요람인 부천 창업 융·복합허브 조성
4. 국가시범지구사업의 시행자 (변경) : (기정) 부천시, 한국토지주택공사 (변경) 부천시
5.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(변경 없음)
 - 가. 시행기간 : 2021. ~ 2025.
 - 나. 시행방식 :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후 건축물 등 공급
6. 주요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 (변경 없음)
 - 가. 주요 도입기능

구분	연면적(㎡)	비율(%)	비고
산업·업무시설	20,800	35.5	
주거시설	18,170	31.0	일자리연계형, 청년주택
공영주차장	9,000	15.4	
판매시설	4,090	7.0	공공임대상가, 편의시설 등
생활SOC	6,540	11.1	공공업무, 노유자시설 등
합 계	58,600	100.0	

나. 토지이용계획

구분	면적(m ²)	비율(%)	비고
산업·업무용지	5,768	47.1	산업, 업무, 판매시설 등
주거복합용지	3,846	31.4	주거, 판매, 문화시설 등
공공·문화시설용지	1,635	13.3	공공·행정 등
기반시설(도로)	1,003	8.2	-
합계	12,252	100.0	-

7.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 (변경 없음)

가. 용 적 륜 : 340%이하(산업·업무용지), 300%이하(주거복합용지), 260%이하(공공·문화시설용지)

나. 수용인구 : 420인(280세대)

* 일자리연계형 청년주택을 감안하여 세대당 1.5인 적용(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수용인구 추정)

8.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에 관한 계획 (변경 없음)

가. 도시·군계획시설 : 도로 변경 3개소

나. 공동이용시설 : 공영주차장, 노유자시설, 공공업무시설 등 생활SOC시설 설치

9.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전 대책 (변경 없음) : 해당사항 없음

10.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항 (변경 없음) : 국비 250억원 지원 및 지방비 연계

11.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(변경 없음)

가. 재원 조달 : 국비, 지방비, 주택도시기금 등 시행자 조달

나. 예산 집행계획 : 공사 추진 및 운영관리 계획에 따라 집행

12.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사항 (변경 없음) : 게재 생략

13.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지정에 관한 사항 (변경 없음): 해당사항 없음

14.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: 관계서류는 부천시청 도시재생과(☎ 032-625-3794), 지형도면은 토지이용(<https://eum.go.kr>)에서 열람 가능